

『향토자원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(안)』 주요내용

- 향토자원개발·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(안 제5조 내지 제10조)
 - 국가 및 지자체는 5년마다 향토자원개발·육성방안 수립
 - 개발·육성 기본방향, DB 구축, 향토자원관련 사업계획 등
- 향토자원 품질인증제 실시(안 제 12조 내지 제17조)
 - 자치단체장이 지역 향토자원에 대해 품질보증과 품질관리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품질인증제 실시
 - ※ 기존의 농림부 등의 운영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한계 보완
- 향토자원 실태조사 및 전국적 DB 구축(안 제18조)
 - 지역별 향토자원 개발 및 지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
 - 유형·지역별 분류체계 마련 DB화로 수요자 중심 접근성 제고
- 향토명인·향토전문기업 지정제도 도입(안 제19조, 제 20조)
 - 시·도지사 추천을 받아 향토전문기업·향토명인 지정
 - 지정된 명인 및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
- 향토공동브랜드 지정 및 육성, 판매·마케팅 지원(안 제21조)
 - 우수한 제품이지만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향토자원에 대한 공동브랜드 개발·육성 및 마케팅 지원
- 향토자원관련 전문인력 양성(안 제22조)
 - 현장 전문교육 실시, 사업선도자(Leader) 및 촉발자(Trigger) 양성 지원
 - 연구기관, 대학 및 고등학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
 - ※ 전남 보성군의 경우 고등학교(보성실업고)에 “녹차과”를 설치·운영
- 향토자원개발조정위원회 등 설치·운영(안 제26조 내지 제28조)
 - 행자부에 관련부처 참여하는 향토자원개발조정위원회 설치
 - 시·도 및 시·군·구는 향토자원개발협의회를 설치·운영